■ 범죄수사규칙 [별지 제128호서식]

긴급임시조치통보서

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긴급임시조치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.

<table>
<tr><td rowspan="4">긴급임시조치
대 상 자</td><td>성 명</td><td colspan="3">()</td></tr>
<tr><td>주민등록번호</td><td colspan="3">(세)</td></tr>
<tr><td>직 업</td><td></td><td>피해아동등
과의 관계</td><td></td></tr>
<tr><td>주 거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피해아동등</td><td>성 명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생 년 월 일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주 거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긴급임시조치
내 용</td><td>[□]</td><td colspan="3">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(제1호)</td></tr>
<tr><td>[□]</td><td colspan="3">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,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(제2호)
기준지: []주거 []학교·학원 []보호시설 []병원
[]그 밖의 장소()</td></tr>
<tr><td>[□]</td><td colspan="3">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(제3호)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긴급임시조치
통 보
일시 및 장소</td><td>일 시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장 소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긴급임시조치
고 지</td><td>[□]</td><td colspan="3">본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을 확인합니다.
(서명 또는 인)</td></tr>
<tr><td>[□]</td><td colspan="3">긴급임시조치 결정을 통보하였으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함
거부사유 :</td></tr>
</table>

년 월 일

사법경찰관(리)